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IT의료융합 기술센터 장비 구축을 위한 환경 설치 공사

2. 공사범위 : IT의료융합 기술센터 3층

[세부범위 등은 공사범위 도면 참조]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

4. 자격조건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5. 공사내용

가. IT의료융합 기술센터 장비 구축을 위한 출입구 확장 출입문 설치

나. 장비 구축을 위한 천고 확장, 텍스 설치

다. 3D프린터실 단열을 위한 복층유리 설치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IT의료융합기술센터 장비구축을 위한 환경설치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 기재한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은 건설교통부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현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적용은 각 공사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해당부분만 발체적용한다

나. 감 독 관 : 감독관이라 함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공사감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시행에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다. 의의사항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사항 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

라. 경미한 변경 현장마무리, 맞춤등으로 재료의 치수와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공정시공계획서 및 시공도 :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승강기 설치 공사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바. 재료일반

(1) 재 료 : 가설공사용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K.S)를 사용한다.

다만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생산 최우량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견 본 품 :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3) 시험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으로 한다. 또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사를 받고 감독관의 지시하에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사시험후의 처리 : 검사 또는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사. 시공검사 :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아. 안전대책 : 본 공사 추진중에 제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책임 및 정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설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자. 관공서등에서의 수속 : 시공사 필요한 관공서, 기타와의 수속은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공사사진 : 공사진행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부분 또는 대립되는 부분은 사진2매씩을 찍어 사용검사원 제출시 공정에 따라 앨범 제작하여 제출토록 한다.

카.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폐기물은 감독관의 감독아래 전문폐기물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하며 폐기물은 안전한 조치 후 감독의 확인 부지 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2. 시 공 개 요

가. 가설공사

(1) 작업현장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장소에 지정규격에 의하여 설치하며 비계는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 기준점 :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3) 복 구 : 가설공사로 인하여 주위의 기존시설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하고, 파손, 손상부분은 즉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4) 청소 및 뒷정리 : 본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항상 공사장 주위를 철저히 점검, 정돈하며 오물 기타 잡물이 생길때는 즉시처리 정돈하도록 한다.

(5) 줄쳐보기, 규준틀, 기타

가. 건축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위해 감독관의 입회하에 줄띄어 보기를 한다.

나. 규준틀은 줄띄어 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요소에 설치하며 규준틀의 형태, 구조 설치방법을 따른다.

다. 규준틀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표시하고 검사를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감독관 지시에 의해 옮겨서 표시한다.

(7) 비계 및 비계발판

가.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등에 따라 다음의 재료 및 방법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절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건축공사 안전관리 규정, 기

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다. 외부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나무비계 사용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라.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8002(강관비계)KSF8003(강관틀비계)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세, 구조체와의 연결, 부속기둥, 밀받침 기타 부속철물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마. 발판은 나비 25센치이상 두께 4센치이상 길이 2~3M정도의 웅이,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질긴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를 쓴다.

(8) 낙하물 방지망 기타 재해방지

가. 수평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 작업원의 위험방지등 필요한 경우 비계밖에 수직으로 철망, 밧, 거적을 설치한다.

나. 수직 낙하물 방지망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건물의 전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망의 높이는 지상2층과 4층스라브 바닥높이를 기준으로 돌출길이 3M이상, 15도 이상 각도를 경사지게 보호철망을 친다.

다.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다른 위험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소방법 및 관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특히 지정되지 아니할 때는 적절한 설비를 하고 관련법규나 따라 고장이나 위험도가 없도록 장비를 설치하고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10) 공사용 각종 설비

급배수, 전등, 동력, 난방등 공사중에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합의하여 설치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으로 한다.

(11) 보양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히 보양을 한다.

(12) 청소 및 정돈

공사기간중 필요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준공시에는 대대적으로 공사장 내외를 청소하여야 한다.

(13)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중 감독관의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가설물의 일부, 전부를 신속히 철거하며 또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공사완료시까지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기구 등을 철수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4)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기타 인화성 재료의 창고는 건축물의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맞게 방화구조 및 재료를 사용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공사

- (1) 철제후레임 : 1.2T EGI강판 후레임 분체도장 마감
- (2) 도어 : 1.6T EGI강판 분체도장 마감
- (3) 모든창호는 기밀창호 “KSF2292” 인정된 제품을 사용할 것
- (4) 창호는 내부실측후 설치할 것

유리공사

- (1) 투명복층유리 :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K.S.L 2001 A급인 것으로 24MM 투명복층유리를 사용.

다. 칸막이 공사

- (1) 종류 : 65MM SGP 칸막이

라. 텍스마감 공사

경량철골 천정틀

가. 경량철골천정틀의 부재는 KS D3609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 조

천정받침대의 구조는 별도의 특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정재를 나사못으로 직접 고정하는 M-BAR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다. 부재의 종류(아파트)

- 1) 몸 체 : M-BAR(일반, 내림천정용), 케링 찬넬, 캐리어
- 2) 부속철물 : 행가볼트, BRACKET, ANGLE, 연결 클립 등
- 3) 달 대 : 행가볼트, 너트, BRACKET

라. 부재의 종류

- 1) 몸 체 : M-BAR, 케링 찬넬, 마이너찬넬
- 2) 부속철물 : 행가볼트, 바조인트, 캘링찬넬조인트 등
- 3) 달 대 : 행가볼트, 너트

마. 텍스의 종류

- (1) 텍스 : 6T*300*600

마. 기타공사

- (1) 전항에 명시되지 않는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방법, 형태, 견본, 재료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 (2) 각 공사 진행 중이나 완료 후라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 정비를 하여야 한다.
- (3) 본 공사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하고, 불명확한 점이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 (4) 본 공사는 시공 중 안전에 철저히 기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